

##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하기 위한 협력이익공유 업무 협약서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과(와)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는 상호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이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 및 범위) 협약 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.

- ① 협력이익공유형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.
- ② 협력이익공유 과제 신규 등록 및 확인과제 실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- ③ 협력이익공유 과제의 신규 모델을 적극 발굴한다.

제3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·배포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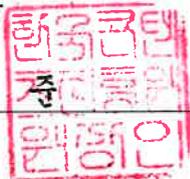
이상 상호 합의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일치함을 확인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0월 30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

김 영



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
사무총장

김 순 철

